

사천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제63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10 .13.
제 출 자 탁석주 외 6인

1. 의결주문

사천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3항이 개정(법률 제7935호, 2006.4.28)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,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사천시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회의 연간 회기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함(안 제2조)
- 나.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함(안 제3조).
- 다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고,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함(안 제4조)
- 라.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함(안 제5조).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(정례회), 제41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
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

제3조(회기) ①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4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②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

제4조(집회일)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.

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제5조(회기운영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임시회에서는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

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사천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공포일 이전의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8조 (정례회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1999.8.31]

제41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.

②삭제 <2005.1.27>

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6.4.28>

□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

제19조의4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<개정 2000.7.1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00.7.1>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회의 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회의 부의안건
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1999.12.31]